

사단법인 함께웃는세상

[임원의 권한·책임·보수에 관한 규정]

제 1 조(목적)

본 규정은 사단법인 함께웃는세상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의 임원의 권한, 책임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법인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선임된 이사 및 감사 등 모든 임원에게 적용한다.

제 3 조(임원의 구성)

-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,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.
- ②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제 4 조(임원의 권한)

-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법인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.
-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 및 회계, 업무 집행 전반을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.

제 5 조(임원의 책임)

- ① 임원은 법령, 정관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임원은 법인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6 조(보수 및 실비변상)

- ① 법인의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다만,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발생한 교통비, 식비, 출장비 등 실비는 예산의 범위

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③ 상근 임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7 조(이해충돌 방지)

임원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하여 의결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이해충돌 발생 시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

제 8 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할 수 있다.

제 9 조(시행일)

본 규정은 2024 년 12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.

2024 년 12 월 22 일 제정

사단법인 함께웃는세상
대표이사 오 기 현 (직인)

